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1012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1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을 55,934,7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55,934,7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

판사 심태규

별지